111 (제238회 - 제4차 부록)

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성주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필요한 보조금 교부 취소 사유를 삭제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(안 제1조)

○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교부 취소 사유 삭제(안 제12조)

-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4

-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5조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. (2018. 10.19.~2018. 11.08.)

○ 규제심사 : 심사완료 (기획감사실-8015 (2018.10.11.))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심사완료 (주민복지과-61644 (2018.11.06.)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상위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을

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